

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3년 6월 2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6. 16(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6. 20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6. 20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- 읍·면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개별법령의 변경·폐지 및 본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▲. 위임사무 신설 : 8개업무.
 - 근거법령 개정 : 3개업무.
 - 개인묘지 설치신고,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 지도·감독, 생활폐기물적정배출을 위한 지도·감독.
 - 관련법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이관된 사무 : 5개업무.
 - 광고물 신고,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,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및 폐지신고,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, 이륜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.
- ▲. 위임사무 삭제 : 14개업무.
 - 근거법령 폐지 : 3개업무.

- 인장업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, 공연신고, 종묘상 등록.

○ 본청으로 업무이관 : 10개업무.

-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, 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, 폐기물처리장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,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, 농촌연료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, 산림내 취사신고 불이행 및 산지정화보호구역내의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징수, 상수도사용료의 감면, 상수도 부정급수 고발 및 처분, 관급 자재수불 및 보관, 급수중지 및 폐전.

○ 규칙으로 제정할 사무 : 1개업무.

-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.

○ 관련법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이관된 사무 : 5개업무.

- 광고물 신고,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,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및 폐지신고,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, 이륜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.

▲. 위임사무 근거법령 개정 : 4개업무.

○ 매·화장신고, 개장신고(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→장사등에관한법률)

○ 건축신고처리사무(건축법제7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17조제4항→지방자치법 제95조)

○ 대마재배허가(대마관리법제5조→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○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·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

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조례입니다.

- 금번 위임되는 사무는 인장업법·주민등록법·자동차관리법·지방공무원법·지방재정법등 법령과 물품관리조례·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·평창군시장관리 및사용조례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사무를 일제히 재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 론 요 지 :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.

붙 임 :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